

## 코로나19 집합금지 ·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연장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1. 지원대상

- 서대문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서 폐업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체(대표)

### 2.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장 : 폐업전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서대문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폐업일 : '20.3.22.(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일) ~ '21.12.17.(지원금 신청마감일)  
※ 폐업일은 세무서 신고 기준 (단, 지원금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비고
유흥업소 5종(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홀덤펍, 학원·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대형마트내 문화센터 및 어린이놀이시설	식당·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유원시설업, 숙박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11.24.~'21.2.14 기준 ·중대본 2단계 + 서울시 방역수칙 조정 ·대상시설내 입점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 소상공인 자격기준

- 상시근로자 : 5명 미만(대표자 제외)
-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50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3. 제외대상(신청일 기준)

- 세무서 사업자 미등록,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기준일 이외 폐업,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 위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대상)
- ※ 부정수급 확인시 반납 조치

### 4. 지원금액 : 50만원(계좌 지급)

※ 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1명만 지급

### 5. 신청기간 : 2021.7.1.(목) ~ 2021.12.17.(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6.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중 선택

- 방문 :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엘리베이터 오른쪽)
- 팩스 : 02-330-1368
- 이메일 : [EDENHALL@sdm.go.kr](mailto:EDENHALL@sdm.go.kr)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후 3일 이내 접수문자를 못받았을 경우 02-330-8185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7. 제출서류     ※ 이메일 신청시 해당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또는 발급 방법
필수 제출	대표자 신분증(앞면), 대표자 통장 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접수처 또는 첨부서식 1번, 2번
	폐업사실증명		세무서 또는 흠택스
	아래 ① 또는 ② 선택하여 필수 제출		
	① 정부 폐업재도전 장려금 받은 경우	수령내역 화면캡처	<a href="http://재도전자장려금.kr">http://재도전자장려금.kr</a> 수령화면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② 정부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세무서 또는 흠택스
		대표자 포함 2인~5인 사업장 오른쪽 서류 추가 제출	아래 중 1개 선택(폐업연도 1개월치)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고용산재)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또는 발급 방법
공동대표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인민원발급기 : 서대문구청 1층 또는 동주민센터</li> <li>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li> </ul>
신용불량자 (계좌입금 불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관련 증빙 1부</li> <li>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li>③ 가족명의 통장사본 1부</li> <li>④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서식 4-1)</li> <li>⑤ 계좌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1부(서식 4-2)</li> <li>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서식 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 첨부파일 참조</li> </ul>
위임신청	<p>대표자(위임자) :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 신분증</p>	위임장(서식 3)

###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는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 인터넷 국세증명 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정부24(<http://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어디서나 민원 :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발급 가능(3시간 소요)

## 8. 통지 방법 : 문자 안내

- 이메일·팩스 접수완료 안내(1차) 후 지급완료 문자 안내(2차)  
 ※ 방문접수자는 접수완료 문자 미발송 / 서류보완 필요시 별도 안내 등

## 9. 지급 방법 : 적격 대상자에게 신청일 다음주 목요일 계좌 지급 원칙

## 10. 이의신청

- 부적격인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과는 7일 이내 문자 통지)

## 11. 문 의

- 서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구청 6층) : 02-330-6748, 6749, 6798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 02-330-8185

붙임 1. 신청서식 각 1부.

2. 자주묻는 질문답변 1부.